

「직장 방위협의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18. 11. 19. 개정 판 (시행 2019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78/compare?from=193&to=88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40:1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협의회는 총장(의장), 부총장, 각 처장, 재무실장, <u>인성교육원장</u> , 예비군대대장(간사)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	제2조(구성) 협의회는 총장(의장), 부총장, 각 처장, 재무 <u>처</u> 장, 예비군대대장(간사)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
제4조(기능)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4-09-01> 1.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.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 가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 나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.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.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과 훈련부대와와의 유대강화 4. 기타 의장이 <u>승인한 사항</u>	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14-09-01> 1.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.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 가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 나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.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.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과 훈련부대와와의 유대강화 4. 기타 <u>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</u> (개정 2018-11-19)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장 방위협의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재무실장, 인성교육원장, 예비군대대장(간사)을"을 "재무처장, 예비군대대장(간사)을"로 한다.

제4조 중 "방위협의회"를 "협의회"로 하고, "의장이 승인한 사항"을 "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(개정 2018-11-19)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